서울특별시 서초구 아외운동기구 설치 및 관리 조례안 (박미효 의원 발의)

의 안 133 버호

발의연월일: 2019. 08. 21.

발 의 자 : 박미효 의원(1명)

찬 성 자 : 김성주·이현숙·장옥준· 허 은 의워(4명)

1. 제안이유

서초구 관내에 야외운동기구의 설치 및 운영 등 효율적인 유지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주민들의 건강증진 등에 기여하기 위함

2. 주요내용

가. 야외운동기구 설치·관리를 위한 대책 마련 및 예산 확보(안 제4조)

나. 야외운동기구의 설치장소 및 설치기준(안 제5조 및 제6조)

다. 유지관리 및 위탁(안 제8조, 제9조)

마. 영조물배상공제 등록(안 제10조)

3. 참고사항

가. 관계법령: 「지방자치법」제22조

나. 예산조치 : 해당사항 없음

다. 사전협의 : 교육체육과

서울특별시 서초구 야외운동가구 설치 및 관리 조례안 (박미효 의원 발의)

- 제1조(목적) 이 조례는 야외운동기구의 설치 및 효율적인 유지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주민의 건강증진과 건전한 여가선용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.
- 제2조(정의)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.
 - 1. "야외운동기구"란 서울특별시 서초구청장(이하 "구청장"이라 한다)이 주민의 체력증진을 위하여 야외에 설치한 개별 운동기구를 말한다.
 - 2. "이용자"란 야외운동기구를 사용하는 주민을 말한다.
- 제3조(적용범위) 이 조례는 구청장이 설치한 야외운동기구에 대하여 적용한다.
- 제4조(예산의 확보) 구청장은 주민의 건강증진에 필요한 야외운 동기구를 설치·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대책을 마련하고 적절 한 예산을 확보하여야 한다.
- 제5조(설치장소)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장소에 야외운동기구를 설치하여야 한다.

- 1. 이용자의 접근성과 편의성을 고려하여 다수의 주민이 거주 하는 지역의 공공장소(공원 등)
- 2.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장소
- 제6조(설치기준) ① 야외운동기구를 설치할 경우에는 시설물이 설치되지 않은 지역을 우선하여 현지 조사 및 검토 후 설치한다.
 - ② 야외운동기구가 이미 설치된 장소에는 신규 설치를 지양하고 기존 시설의 유지관리를 위주로 한다.
 - ③ 야외운동기구는 안전기준에 적합한 것이어야 하며 기초와 바닥재는 안전하게 설치하여야 한다.
- 제7조(안내문 게시) 구청장은 야외운동기구에 별표의 안내 표시 문을 게시·부착하여야 한다.
- 제8조(유지관리) ① 구청장은 매년 야외운동기구의 점검계획을 수립하고 연 2회 이상 시설물에 대한 일제조사·점검을 실시하 여야 한다.
 - ② 구청장은 야외운동기구의 점검계획에 따라 점검·보수하여 이용자의 불편함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.

제9조(사무의 위탁)

① 구청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야외운동기구의 유지 관리 사무 중 그 일부 또는 전부를 법인·단체에게 위탁할 수 있다.

- ② 제1항에 따른 위탁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「서울특별 시 서초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」를 준용한다.
- 제10조(영조물배상공제 등록) 구청장은 야외운동기구의 설치를 완료하였을 때에는 야외운동기구 이용 시에 발생하는 피해를 보상하기 위하여 수시 또는 매년 말 영조물배상공제 등록을 신 청하여야 한다.
- 제11조(시행규칙)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.

부 칙

제1조(시행일)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제2조(경과조치) 이 조례 시행 당시 이미 설치되었거나 설치 중인 야외운동기구는 이 조례에 따라 설치된 것으로 본다.

[별표]

안내 표시문(제8조 관련)

불편사항이나 건의사항이 있으시면 아래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.				
관리번호				
기 구 명				
설치년월				
관리부서				
연락처				

「서울특별시 서초구 야외운동기구 설치 및 관리 조례안 (박미효 의원 발의)」 서명부

발 의 의 원		찬 성 의 원		
의 원 명	서명·날인	의 원 명	서명·날인	
时间度	\$	古经	A	
		0/ 249	Lull's	
		76 9年	hanf.	
		3 2	Hedr	
		20		